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민원사항

유형	보험상품 안내관련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 받음
	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목돈마련에 유리하고 자금인출이 가능하며, 은행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고객은 그 말을 믿고 청약 서에 서명함
내용	A고객은 상품설명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의 설명을 믿었기에 전달받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해지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 인하던 중 최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이었으며 지금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
	A고객은 가입 당시 사망보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며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의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상품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 전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또한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
사항	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유형	유니버셜 제도관련
	A고객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동안 매월 기본보험료 △△만원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월대체보험료만큼만 매월 납입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모집인 B씨에게 안내 받음.
내용	A고객은 2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로 수개월 동안 월대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으며, 이후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해지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자유납입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 증가와 그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소진으로 예상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것을 확인함
	이에 유니버셜 기능 및 월대체보험료 공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공제함
유의	특히, 중도인출을 하거나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보다 적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상보
사항	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며, 계약이 조기에 실효될 수 있음. 보험기간(종신)까
	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 가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기급적을 답답이어야 임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상품의 특이사항

문 :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보험료는 다른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 :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일시납 계약의 일시납보험료 또는 월납 계약의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을 초과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
- 월납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이내[이하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라 합니다]에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을 경우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 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 보험료 납입한도
- 월납 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월납 기본보험료 × 12 ×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 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고, 이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

한도로 합니다.

- 일시납 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일시납 기본보험료 × (1+1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 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고, 이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10년을 최대한도로 한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문 :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답: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계약자는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 일시납 계약의 경우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연도 기준 연12회까지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 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문 :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에 건강체로 가입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답: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에 건강체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건강체할인특약॥ 가입시점에 "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하고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20세 이상인 분

○ 비흡연 : 청약일 이전 최근 1년간 흡연사실이 없는 자

○ 혈 압: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인 자

○ 체 격:BMI(Body Mass Index) 수치가 18.0~26.9인 자

※ BMI수치 = 몸무게(kg)/[키(m)×키(m)]

〈키 175cm 일 경우 m = 1.75〉

※ 건강체 가입 대상자는 청약시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첨부 (다만, 진단계약

의 경우 해당 진단 항목에 흡연검사 추가로 실시)

※ 건강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 기본보장형, 주계약 가입금액 10억원, 20년 월납〉

(단위: 원)

ſ	건강체		표준체	
구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1,862,000	1,735,000	1,901,000	1,747,000
30세	2,229,000	2,072,000	2,275,000	2,087,000
40세	2,689,000	2,490,000	2,745,000	2,507,000

문 :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에 건강체로 가입한 후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건강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해야할 보험료로 적용하고,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는 장래에 대하여 해지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 ③ 계약자가 ②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건

강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①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문:「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프리미어」및「교보New헬스케어서비 스 프레스티지」란 무엇인가요?

답:「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는 건강상담/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주요질병 치료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프리미어」는「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에 차량에스코트/방문심리상담 등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프레스티지」는「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프리미어」에 가족 간호사 병원동반 /건강검진 차량에스코트 등을 결합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제공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 내 제휴서비스는 각 서비스 제공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 서비스의 신청은 고객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고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다만,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 : 갱신형 특약의 경우 어떻게 갱신이 되나요?

답:

- ① 갱신형특약은 갱신할 때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갱신 보험료가 변동(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특약별 갱신주기는 ▶ 보험가입 자격요건 2. 보험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갱신형특약은 특약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계약자가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③ 주계약의 납입이 완료되더라도 특약이 갱신되어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 ④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에 관한 사항

[기준 : 남자, 40세, 표준체, 보험가입금액 10억원, 20년납, 월납]

구분		기본보장형 플러스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기본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보험료 산출이율		가입후 경과기간 15년 미만 : 2.5% 가입후 경과기간 15년 이상 : 2.0%			가입후 경과기간 15년 미만 : 2.75% 가입후 경과기간 15년 이상 : 2.25%		
최저5	보증이율			0.7	5%		
보험	료(원)		3,033,000		2,745,000 (환급금보증형 대비 9.5% 낮음)		
보험:	료 총액		727,920,000		(환급금보	658,800,000 보증형 대비 9.5	% 낮음)
W > 4 B	미보증형 대비		보증형 대비 낮음	2	보증형 대비 낮음		
비교설명	보증	미보증			미보증		
	부과	미부과			미부과		
	경과기간	①공시이율 2.40% 가정	②평균공시이 율과 공시이 율 중 낮은 이율 : 2.40% 가정	③최저보증이 율 가정	①공시이율 2.40% 가정	②평균공시이 율과 공시이 율 중 낮은 이율 : 2.40% 가정	③최저보증이 율 가정
해지환급률	10년	79.3%	79.3%	79.3%	72.3%	72.3%	66.5%
	20년	92.4%	92.4%	92.0%	84.2%	84.2%	70.5%
	30년	114.4%	114.4%	112.8%	103.1%	103.1%	69.6%
	40년	135.2%	135.2%	132.8%	115.5%	115.5%	49.2%
	50년	162.0%	162.0%	159.0%	108.9%	108.9%	0.0%
납입완료시점(20년)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금액)		7.0% (5,124만원)	7.0% (5,124만원)	6.6% (4,774만원)			

[※] 보증비용 부과율 : 납입기간까지 부과된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납입기간까지의 누적 보험료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은 계약 해지시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상기 비교표의 환급률 차이를 일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기본보장형, 기본보장형 플러스

- ※ 회사의 건강체 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표준체/건강체 구분
- ※ 금리연동형/순수보장형/개인형

2. 보험기간

○ 주계약

종형구분	세형구분	보험기간
기본보장형 기본보장형 플러스	-	종신

3.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5년·7년·10년·15년·20년·25년·30년납, 55세·60세·65세·70세·80세납

4.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5. 가입나이

기본보장형, 기본보장형 플러스

I FOI	최저	최고 가입가능나이			
납입	가입가	기본의	보장형	기본보장형 플러스	
기간	능나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일시납		80세	80세	80세	80세
5년납		70세	73세	67세	71세
7년납		68세	71세	65세	69세
10년납		65세	69세	63세	67세
15년납		62세	66세	59세	64세
20년납		58세	62세	55세	60세
25년납	만15세	55세	59세	52세	57세
30년납		51세	56세	49세	54세
55세납		50세	50세	50세	50세
60세납		55세	55세	55세	55세
65세납		60세	60세	60세	60세
70세납		65세	65세	65세	65세
80세납		55세	69세	48세	61세

[※] 다만, 특약의 가입나이는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저 10억원

※ 다만, 보장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 및 회사의 계약선택 기준에 따라 주계약 가입한도 및 특약별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7. 건강진단 여부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Ⅱ가 부가된 경우 최저 가입나이는 20세입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 제한 사항

▶ 상품의 구성

주계약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주계약 [기본보장형/기본보장형 플러스]			
제도성특약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사후정리특약 + 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 + 무배당 사망보장증액특약 +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는 신청 당시 피보험자(주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에 한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따라 부가함으로써,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신청 당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가입시점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1. 주계약

1-1. 사망보험금

(기준: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보험금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기본보험료가 월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을 계산합니다.

2. 기본보험금

기본보장형: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보장형 플러스: 「기본사망보험금, 예정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 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합니다.
- 5. 예정계약자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가입 후 15년 미만은 연복리 2.75%(기본보장형 플러스의 경우 2.5%), 15년 이상은 연복리 2.25%(기본보장형 플러스의 경우 2.0%)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계약자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 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고액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고액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액유지보너스 계약자적 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2.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시	ㅏ맛보 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 + 전환계약의 가산보험금액

(주)

- 1.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은 전환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과 예정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전환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은 생활자금 지급에 따라 자동 감액된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전환계약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전환계약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전환 전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3.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 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합니다.
- 4. 예정계약자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복리 2.0%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5. 전환계약의 가산보험금액은 계약자적립액이 예정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 계약자적립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과의 차이에 따라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 6. 전환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생활자금 전환에 의한 생활자금 지급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① 보험 당사자간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 제한
-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생명보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에 의한 계약 관련 사항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제1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 사항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등)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기본보 장형의 경우 보험가입 후 15년 미만은 연복리 2.75%, 15년 이상은 연복리 2.25%, 기본보 장형 플러스의 경우 보험가입 후 15년 미만은 연복리 2.5%, 15년 이상은 연복리 2.0% 입 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사망률				
기준나이	남 자		여 자		
	표준체	건강체	표준체	건강체	
20세	0.000290	0.000224	0.000210	0.000189	
40세	0.000830	0.000680	0.000560	0.000525	
60세	0.004120	0.003530	0.001770	0.001679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에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주계약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주1)}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주2)}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감안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으로서 2024년 5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2.40%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 부과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주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5년) 수익률, 회사채(무보증3년, AA-)수익률,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91일)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위의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 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주계약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교보뉴프리미어VIP종 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의 최저 한도로서,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연 복리 0.75%입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뉴프리 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교보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최저보증비용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출합니다.

[기본보장형]

구분		20년 이내	20년 초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일시납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5%	
	_r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3%	-
	단기납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2%	

[기본보장형플러스]

구분			보험기간
최저사망보험금	일시납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5%
보증비용	단기	기납	매단 계획자작립력의 0.5%
	기본 보험료	일시납	일시납보험료의 2.5%
	부분	단기납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기본보험료의 2.5%
최저해약환급금	방 납입	일시납	추가납입보험료의 2.5%
보증비용		단기납	
	일시납		메크 게야기적인에이 이 69/
	단기	기납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6%
2 13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표준체, 주계약 기본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0억원, 40세, 20년납, 월납

※ 단위 : 원

1. 남자 (월납보험료 2,745,000원)

경과년	납입보험료 (A)	2024.5월 현재 공시이율(2.40%)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 낮은 이율(2.40%		최저보증이율 가정	
3의단 -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8,235,000	0	0.0%	0	0.0%	0	0.0%
6개월	16,470,000	0	0.0%	0	0.0%	0	0.0%
9개월	24,705,000	0	0.0%	0	0.0%	0	0.0%
1년	3,294,000	0	0.0%	0	0.0%	0	0.0%
2년	6,588,000	20,292,432	30.8%	20,292,432	30.8%	19,548,028	29.7%
3년	9,882,000	47,786,621	48.4%	47,786,621	48.4%	46,120,134	46.7%
4년	13,176,000	75,700,374	57.5%	75,700,374	57.5%	72,733,186	55.2%
5년	16,470,000	104,046,442	63.2%	104,046,442	63.2%	99,390,708	60.3%
6년	19,764,000	132,829,044	67.2%	132,829,044	67.2%	126,087,355	63.8%
7년	23,058,000	162,053,216	70.3%	162,053,216	70.3%	152,818,313	66.3%
8년	26,352,000	186,960,547	70.9%	186,960,547	70.9%	174,815,008	66.3%
9년	29,646,000	212,338,467	71.6%	212,338,467	71.6%	196,854,294	66.4%
10년	32,940,000	238,194,279	72.3%	238,194,279	72.3%	218,932,354	66.5%
15년	49,410,000	384,292,881	77.8%	384,292,881	77.8%	337,705,651	68.3%
20년	65,880,000	554,728,810	84.2%	554,728,810	84.2%	464,641,016	70.5%
25년	65,880,000	632,222,403	96.0%	632,222,403	96.0%	479,905,897	72.8%
30년	65,880,000	679,400,210	103.1%	679,400,210	103.1%	458,349,663	69.6%
35년	65,880,000	724,885,654	110.0%	724,885,654	110.0%	416,452,602	63.2%
40년	65,880,000	761,197,399	115.5%	761,197,399	115.5%	324,069,518	49.2%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의 예시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고액유지보너스를 반영한 금액(다만, 해당년도에는 미반영)으로 최저보증이율, 평 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5월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계

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로 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
- 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 계약의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 ※ 위의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여자 (월납보험료 2,507,000원)

거기녀	납입보험료 (A)	2024.5월 현재 공시이율(2.40%)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2.40%) 가정		최저보증이율 가정	
경과년		해약 한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 한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7,521,000	0	0.0%	0	0.0%	0	0.0%
6개월	15,042,000	0	0.0%	0	0.0%	0	0.0%
9개월	22,563,000	0	0.0%	0	0.0%	0	0.0%
1년	30,084,000	0	0.0%	0	0.0%	0	0.0%
2년	60,168,000	17,926,550	29.8%	17,926,550	29.8%	17,250,020	28.7%
3년	90,252,000	43,077,363	47.7%	43,077,363	47.7%	41,562,326	46.1%
4년	120,336,000	68,644,872	57.0%	68,644,872	57.0%	65,946,457	54.8%
5년	150,420,000	94,630,115	62.9%	94,630,115	62.9%	90,394,802	60.1%
6년	180,504,000	121,034,812	67.1%	121,034,812	67.1%	114,900,280	63.7%
7년	210,588,000	147,870,087	70.2%	147,870,087	70.2%	139,465,025	66.2%
8년	240,672,000	170,710,687	70.9%	170,710,687	70.9%	159,654,527	66.3%
9년	270,756,000	194,004,896	71.7%	194,004,896	71.7%	179,907,369	66.4%
10년	300,840,000	217,764,721	72.4%	217,764,721	72.4%	200,225,689	66.6%
15년	451,260,000	352,429,800	78.1%	352,429,800	78.1%	310,016,944	68.7%
20년	601,680,000	510,447,110	84.8%	510,447,110	84.8%	428,624,456	71.2%
25년	601,680,000	585,514,556	97.3%	585,514,556	97.3%	448,244,534	74.5%
30년	601,680,000	636,180,841	105.7%	636,180,841	105.7%	440,221,166	73.2%
35년	601,680,000	688,925,027	114.5%	688,925,027	114.5%	423,040,386	70.3%
40년	601,680,000	737,123,878	122.5%	737,123,878	122.5%	377,709,692	62.8%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위의 예시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고액유지보너스를 반영한 금액(다만, 해당년도에는 미반영)으로 최저보증이율, 평 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5월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계 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로 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 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 계약의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 ※ 위의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 : 표준체, 주계약 기본보장형 플러스, 보험가입금액 10억원, 40세, 20년납, 월납

※ 단위 : 원

1. 남자 (월납보험료 3,033,000원)

경과년	납입보험료 (A)	2024.5월 현재 공시이율(2.40%)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 낮은 이율(2.40%		최저해약환급금	
경파닌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9,099,000	0	0.0%	0	0.0%	0	0.0%
6개월	18,198,000	0	0.0%	0	0.0%	0	0.0%
9개월	27,297,000	0	0.0%	0	0.0%	0	0.0%
1년	36,396,000	0	0.0%	0	0.0%	0	0.0%
2년	72,792,000	27,241,005	37.4%	27,241,005	37.4%	27,241,005	37.4%
3년	109,188,000	59,475,441	54.5%	59,475,441	54.5%	59,475,441	54.5%
4년	145,584,000	92,338,607	63.4%	92,338,607	63.4%	92,338,607	63.4%
5년	181,980,000	125,851,155	69.2%	125,851,155	69.2%	125,851,155	69.2%
6년	218,376,000	160,025,742	73.3%	160,025,742	73.3%	160,025,742	73.3%
7년	254,772,000	194,876,287	76.5%	194,876,287	76.5%	194,876,287	76.5%
8년	291,168,000	225,376,968	77.4%	225,376,968	77.4%	225,376,968	77.4%
9년	327,564,000	256,601,033	78.3%	256,601,033	78.3%	256,601,033	78.3%
10년	363,960,000	288,566,012	79.3%	288,566,012	79.3%	288,566,012	79.3%
15년	545,940,000	471,063,715	86.3%	471,063,715	86.3%	470,198,127	86.1%
20년	727,920,000	672,931,073	92.4%	672,931,073	92.4%	669,389,088	92.0%
25년	727,920,000	767,351,889	105.4%	767,351,889	105.4%	757,358,773	104.0%
30년	727,920,000	832,510,290	114.4%	832,510,290	114.4%	820,963,217	112.8%
35년	727,920,000	903,406,228	124.1%	903,406,228	124.1%	889,634,551	122.2%
40년	727,920,000	984,025,442	135.2%	984,025,442	135.2%	966,435,225	132.8%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의 예시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고액유지보너스를 반영한 금액(다만, 해당년도에는 미반영)으로 최저보증이율, 평 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5월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다만, 각

각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 산출이율(보험가입 후 15년 미만은 연복리 2.5%, 15년 이상은 연복리 2.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금액)이며,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로 합니다.
- ※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 산출이율(보험가입 후 15년 미만은 연복리 2.5%, 15년 이상은 연복리 2.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 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 계약의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 ※ 위의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여자 (월납보험료 2,796,000원)

경과년	납입보험료 (A)	2024.5월 현재 공시이율(2.40%)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2.40%) 가정		최저해약 환급금	
		해약환 급금 (B)	환급률 (B/A)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8,388,000	0	0.0%	0	0.0%	0	0.0%
6개월	16,776,000	0	0.0%	0	0.0%	0	0.0%
9개월	25,164,000	0	0.0%	0	0.0%	0	0.0%
1년	33,552,000	0	0.0%	0	0.0%	0	0.0%
2년	67,104,000	24,952,074	37.2%	24,952,074	37.2%	24,952,074	37.2%
3년	100,656,000	54,903,087	54.5%	54,903,087	54.5%	54,903,087	54.5%
4년	134,208,000	85,470,933	63.7%	85,470,933	63.7%	85,470,933	63.7%
5년	167,760,000	116,663,943	69.5%	116,663,943	69.5%	116,663,943	69.5%
6년	201,312,000	148,491,488	73.8%	148,491,488	73.8%	148,491,488	73.8%
7년	234,864,000	180,972,441	77.1%	180,972,441	77.1%	180,972,441	77.1%
8년	268,416,000	209,403,222	78.0%	209,403,222 78.0%		209,403,222	78.0%
9년	301,968,000	238,526,739	79.0%	238,526,739	79.0%	238,526,739	79.0%
10년	335,520,000	268,363,598	80.0%	268,363,598	80.0%	268,363,598	80.0%
15년	503,280,000	439,003,423	87.2%	439,003,423	87.2%	438,204,860	87.1%
20년	671,040,000	628,286,334	93.6%	628,286,334	93.6%	625,034,886	93.1%
25년	671,040,000	719,404,589	107.2%	719,404,589	107.2%	710,337,670	105.9%

30년	671,040,000	784,547,846	116.9%	784,547,846	116.9%	774,361,960	115.4%
35년	671,040,000	854,964,387	127.4%	854,964,387	127.4%	843,348,809	125.7%
40년	671,040,000	930,563,815	138.7%	930,563,815	138.7%	916,727,887	136.6%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의 예시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고액유지보너스를 반영한 금액(다만, 해당년도에는 미반영)으로 최저보증이율, 평 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5월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다만, 각 각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 산출이율(보험가입 후 15년 미만은 연복리 2.5%, 15년 이상은 연복리 2.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금액)이며,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변동하 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로 합니다.
- ※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 산출이율(보험가입 후 15년 미만은 연복리 2.5%, 15년 이상은 연복리 2.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 계약의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 ※ 위의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구분 ① 현재 공시이율 2.40% 가정		③최저해약 환급금	
납입완료시점(20년)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	7.0%	7.0%	6.6%	

- * 대표계약기준 : 기본보장형 플러스, 남자, 40세, 표준체, 보험가입금액 10억원, 20년납, 월납
- * 보증비용 부과율 : 납입기간까지 부과된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납입기간까지의 누적 보험료
- * 이 보험상품은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증비용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가격지수

문: 보험가격지수란?

답: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 지수"라고 합니다.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가입	보험	납입	보험가	가입금액		
상품명	나이 (세)	기간 (년)	기간 (년)	남자	여자	(만원)	
기본보장형 표준체	40	종신	20	119.2%	122.0%	100,000	
기본보장형 플러스 표준체	40	종신	20	131.7%	136.0%	100,000	